

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715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0. 19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

2. 주요골자

- 출산휴가 기간 "60일"을 "90일"로 연장(안 제23조제2항)

3. 관련근거

-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
(경상남도 총무12100-11790, 2001. 10. 5.)

4. 본문 : 붙임

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3조제2항중 “60일”을 “90일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1. 11. 1부터 시행한다.
- ②(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특별휴가) ①생략</p> <p>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</p> <p>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<u>60일</u></p> <p>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	<p>제23조(특별휴가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..... <u>90일</u></p> <p>.....</p>